

산정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2023. 4.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1.1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 14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1.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중앙일간지 : 서울신문
- 지방일간지 : 광주매일신문
- 정보통신망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1.1.2 주요 공람·공고 내용

- 공람기간 : 2023년 02월 22일 ~ 04월 04일(3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각 시·군 하천관리부서
- 주민의견 제출기간 : 2023년 04월 11일까지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주민의견 제출장소 : 공람장소
- 주민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1.1.3 주민설명회 개최

하천명	위 치	연 장 (km)	주민설명회			
			날 짜	시 간	장 소	참석인원
산정천	해남군 송지면	3.21	2023. 03. 05.(화)	14:00	송지면사무소	4인

1.1.4 공고 · 공람관련자료

전라남도 공고 제2024-207호

지방하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2.

전라남도지사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하천기본계획 수립(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
- 계획하천 위치,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하천명	위치	연장 (km)	주민설명회		
			날짜	시간	장소
1. 장성천	나주시 노안면	8.30	2024.03.07.(목)	10:00	노안면사무소
2. 감정천	나주시 노안면	3.74			
3. 삼천천	담양군 창평면	2.99	2024.03.08.(금)	10:00	창평면사무소
4. 무동천	구례군 산동면	2.35	2024.03.07.(목)	14:00	산동면사무소
5. 산정천	해남군 송지면	3.21	2024.03.05.(화)	14:00	송지면사무소
6. 신평천	해남군 계곡면, 옥천면	1.10	2024.03.06.(수)	16:00	계곡면사무소
			2024.03.06.(수)	14:00	옥천면사무소
7. 월평천	강진군 도암면, 해남군 옥천면	5.96	2024.03.06.(수)	14:00	옥천면사무소
			2024.03.06.(수)	10:00	산정마을회관

※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참석 불가, 주민설명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 필수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24. 2. 22.~2024. 4. 4.(30일) (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
공람장소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시·군 하천관리부서(읍·면사무소) ※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정보통신망	전남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081) 또는 시·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Jeollanam-do government.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tize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Policy Information', 'Information Disclosure', 'Resident Inquiry', 'Category-wise Information', and 'Jeollanam-do Profile'. On the right, there are links for 'Logout', 'User Center', and 'Language Selection'. A search bar is located at the top center.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idebar on the left with links to 'Public Notice' (selected), 'Policy Information', 'Information Disclosure', 'Resident Inquiry', 'Category-wise Information', 'Jeollanam-do Profile', 'Citize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Policy Information', 'Information Disclosure', 'Resident Inquiry', and 'Category-wise Information'. The main content area has a title 'Notice/Advertisement' and a sub-title 'Notice/Advertisement'. It displays a document titled 'Notice of the determination of the Hyeonchung-gu Residential Ar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itial Assessment) due to the residents' opinion survey and the notice of the residents' meeting' dated February 22, 2024. The document is available in PDF format (88KB) and Microsoft Word format (57KB). Below the document, there is a table comparing two versions of the notice: 'Original' (February 22, 2024) and 'Revised' (February 22, 2024).

The bottom section is titled 'Internet Notice (Jeollanam-do Home Page)' and shows a screenshot of the EI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terface, specifically the 'Public Notice' section. It lists variou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their status.

신문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207호
지방하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 구역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전라남도지사

1. 개회의 개요
■ 개회명 : 하천기본계획 수립(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
■ 개회하천 위치,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하천명	위치	연장 (km)	주 민 설 명 회
1. 장성천	나주시 노안면	8.30	노안면사무소
2. 강정천	나주시 노안면	3.74	
3. 삼천천	담양군 청평면	2.99	청평면사무소
4. 무등천	구례군 산동면	2.35	산동면사무소
5. 산천천	해남군 송지면	3.21	송지면사무소
6. 신동천	제3구 계곡면, 와령면	1.10	계곡면사무소
7. 월봉천	강진군 도암면 해남군 옥천면	5.96	도암면사무소 옥천면사무소

※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참석 불가. 주민설명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 필수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 람 기 간	2024. 2. 22 ~ 2024. 4. 4 (30일) (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
공 람 장 소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시·군 하천관리부서(읍·면사무소)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정 보 봉 신 망	전남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ass.go.kr)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공람 개시 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081) 또는 시·군 하천 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4-207호
지방하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 구역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전라남도지사

1. 개회의 개요
■ 개회명 : 하천기본계획 수립(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
■ 개회하천 위치,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하천명	위치	연장 (km)	주 민 설 명 회
1. 장성천	나주시 노안면	8.30	2024.03.07.(목) 10:00 노안면사무소
2. 강정천	나주시 노안면	3.74	
3. 삼천천	담양군 청평면	2.99	2024.03.08.(금) 10:00 청평면사무소
4. 무등천	구례군 산동면	2.35	2024.03.07.(목) 14:00 산동면사무소
5. 산천천	해남군 송지면	3.21	2024.03.06.(화) 14:00 송지면사무소
6. 신동천	제3구 계곡면, 와령면	1.10	2024.03.06.(화) 16:00 계곡면사무소
7. 월봉천	강진군 도암면 해남군 옥천면	5.96	2024.03.06.(화) 14:00 도암면사무소 옥천면사무소

※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참석 불가. 주민설명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 필수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 람 기 간	2024. 2. 22 ~ 2024. 4. 4 (30일) (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
공 람 장 소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시·군 하천관리부서(읍·면사무소) ※관련 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
정 보 봉 신 망	전남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ass.go.kr)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해당 하천별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공람 개시 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081) 또는 시·군 하천 관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간지(서울신문)

지역일간지(광주매일신문)

주민설명회 참석 사진 및 참석자 명부(산정천)




사 일	연	주 소	온원자	시 명
2024년 3월 5일(화요일)	14시	송지면사무소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081)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5 -

1.1.5 공고 · 공람 결과

[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장성천 등 7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주요 계획 내용

하천명	연장(km)	계획내용			
		축제	제방 및 호안	횡단시설물	교량
장성천	8.16	7,281m	7,621m	-	제가설(1개소) 제가설(5개소)
감정천	3.6	4,541m	835m	-	제가설(2개소) 제가설(10개소)
삼천천	2.97	2,752m	743m	-	제가설(9개소) 제가설(6개소)
무동천	2.35	1,002m	388m	-	제가설(7개소) 제가설(3개소)
산정천	3.21	4,428m	1,605m	-	제가설(1개소) 제가설(7개소)
월평천	5.94	6,139m	2,805m	-	제가설(4개소) 제가설(4개소)
신평천	1.26	1,669m	-	-	제가설(2개소) 제가설(2개소)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2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계획수립자 / 승인기관 :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

I. 총괄

- 동 계획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7개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장성천(나주시), 감정천(나주시), 삼천천(담양군), 무동천(구례군), 산정천(해남군), 월평천(강진군·해남군), 신평천(해남군)
- 하천기본계획은 상위·관련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대안 분석 시 치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제시

- 1 -

-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안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충실히 반영·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안 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초안 대비 변경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쟁점(시설물계획별 합계를 포함) 작성과 함께 변경 사유를 제시

II. 항목별 검토의견

가. 계획의 적정성

- 동 하천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과의 부합·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해·재해이력 등을 종합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최근 계획하천에서 수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금회 개수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
- 계획하천이 풍수해 위험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금회 시설물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제시
- 일률적·획일적 설계기준(홍수량)을 적용하기보다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하천체해위험지구, 상습침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합니다.
-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개수율,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면적 및 시설(가옥, 농경지, 도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이 크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시설계획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제시

- 2 -

-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횡적구조물(교량, 보·낙차공)은 존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칠거하고, 존치 또는 제가설·신설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와 사유, 설치할 시설물의 형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제시
- 횡적구조물의 칠거는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칠거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한 후 이를 계획홍수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제시
- 어도 설치 계획을 제시한바, 부득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전면 월류식 자연형 여울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형 어도 설치를 계획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할 보전지역* 등을 명기하고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를 하천구역은 수변식생 원형보전, 보·낙차공 칠거 등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합니다.
- 생태지연도 1등급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이생동식물 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최근에 고시된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의 지정 사유를 제시
- (장성천, 감정천, 산정천, 월평천) 하천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및 습지 구간은 가급적 보축으로 계획하고 축제가 불가피할 시 축제 및 보축 등 수단·방법 대안에 대한 장·단점(필요성·환경영향)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 후 구체적으로 제시*
- * 축제계획 수립 시와 보축계획 수립 시를 비교·분석

- 3 -

- 문헌·현지조사 결과, 사업구역과 주변에서 법정보호종(삶, 수닭, 황조롱이, 꺽적기 등)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 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합니다.

-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 수달, 삵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구간을 300~500m 단위로 구분한 후,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 별로 공사는 계획을 검토

-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 갈수기기에 기존 유료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 수립 검토

- 교량 공사 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로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 검토

- 동 계획 하천 중 해양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해양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합니다.

- (산정천) 남해로 합류하는 하천이므로 해양·식물상 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 수립·제시

-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은 확폭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바, 확폭 구간을 도면에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 하폭 확장에 따른 축제 구간은 최대한 안경시 자연형 호안으로 계획하고, 자연성을 회복한 호안은 최대한 보전하거나 보축하는 등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4 -

관계기관 검토의견 : 영산강유역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내 여울, 흐름, 패의 반복적 구배 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 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 강구 ○ 하천에 적용인 호안 공법들은 구간별로 형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식생의 도입을 저해(자연석, 석축 쌓기 등)하고,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지양 <p>□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p>* 축제 및 교량 재기설 등 공사 구간 및 내용을 조망점별 사진에 반영·제시</p> <p>□ 수환경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하천의 특성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 중 수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측정 결과, 하류수계 영향 여부,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등 - 계획 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 예측을 위해 하천별 상류, 중류, 하류 지점에 대하여 1회 이상의 수질조사(하천 저질 포함)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하폭 확장 및 하도 정비로 인한 건천화·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지양하고 기존 하천 횃단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축제 또는 보축하는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 5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및 보축 등 제방개획이 수립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개요, 토지이용 현황, 특징(현황사진 포함), 평면도 및 횃단면도 제시 - (부동천) 상대적으로 하폭이 넓은 구간(No.0+350)이 있으므로 하폭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시 ○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 준설로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오염도 평가 결과가 '나쁨' 단계 이하인 경우,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호수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 예규 687호, '15.11.16) 참고 <p>2) 생활환경의 안전성</p> <p>□ 환경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정비 시 대기질, 소음·진동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조사 시 조사범위는 계획하천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p>□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에 대한 설시설계 시,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매출, 운반·수집·보관·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 4. 13.),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동 평가지침(환경부, 2015. 12. 9.) 등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 6 -</p> <p>III.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 문헌자료(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생태·자연도 등) 및 현황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현지조사표(동물상 포함) 및 측정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부록에 첨부) -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직책·성명을 제시하여야 함 끝.
<p>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p> <p>□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하천의 현재·장래의 이용·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간관리 계획(보전, 복원, 친수지구)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위성사전에 공간관리계획 구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현장 사진·도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현황, 계획 등) 및 장래 관리계획 제시 -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원형 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 -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 7 -</p>	<p>□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하천의 현재·장래의 이용·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간관리 계획(보전, 복원, 친수지구)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위성사전에 공간관리계획 구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현장 사진·도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현황, 계획 등) 및 장래 관리계획 제시 -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원형 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 -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 8 -</p>
관계기관 검토의견 : 영산강유역환경청	

- 해남 산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

□ 사업개요

- 위치 : 해남군 송지면 주변
- 규모 : 3.21km
- 시행기관 : 전라남도
- 승인기관 : 전라남도

□ 검토의견

- 본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관할하는 도지사” 와 관련된 道 환경부서의 검토 의견임.
- 본 평가서는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됨.
-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연환경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획하천의 동·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포획 및 낭획방지,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교량, 보, 배수시설물 등은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생태계를 보전·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 구체적인 개발사업 등 추진 시
 - 공사 및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변 수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 가배수로, 오톡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 공사시 기계·장비 등에서 발생되는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 시 작업 일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페기물, 임목폐기물, 공사장비의 폐유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액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대기질과 소음·진동 영향은 기상여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 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하여야 함.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 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하여야 함.
- 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끝.

관계기관 검토의견 :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전략환경향평가서 의견서

(송지 산정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하천사업추진 및 하천 본래의 형태를 훼손하는 계획은 지양하고, 하천 내 시설물의 철거, 보강, 재가설 등을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함.
-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가뭄 등에 대한 데이터분석 및 세부 대책을 반영하기 바람.
- 교량 하부 하천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협의회 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의견

1. 전략환경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설정하기 바람.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환경보전방안과 더불어 집중호우등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범람시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대기, 소음진동, 수질, 동식물상 조사는 기상 및 계절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설정하고 실시해야 함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4. 기타 의견

- 하천 상부를 통과하는 도로 하단 부분은 기둥등에 의해 하천 흐름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강수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하천재해예방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남군

1.1.5.1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자	질의내용	답변내용	비고
주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브구간에 물흐름 장애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구간을 직선화하여 변경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간은 양안으로 주거지 및 상업지가 위치하여 하천구역 편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유로변경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Ⅱ설계기준 및 하천현황 산정천 하천부(0~1+550)) : 주민들이 하천 하류부쪽에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산책로를 설치해 줄 수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계획은 하천기본계획으로 산책로 조성 등 세부사항은 공사를 위한 설계시 반영될 수 있도록 둑마루폭을 하천설계기준에 준용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주민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Ⅱ설계기준 및 하천현황 산정천 하천부(0~1+550) : 상습침수구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생각해달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결과 해당 구간의 침수는 내수위에 의한 침수로 금회 하천기본계획 확폭 등 개수계획을 통해 하천 외수 흐름이 원활해지면 내수에 의한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5.2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가.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검토 의견	○ 본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관할하는 도지사”와 관련된 道 환경부서의 검토 의견임.	—	
	○ 본 평가서는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됨.	—	
	○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본 보고서 작성시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겠음	
	○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획하천 구간의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으며, 계획하천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 계획하천의 동·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포획 및 남획방지,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계획하천의 동·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 방안을 수립·이행 하겠으며,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포획 및 남획방지, 작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 공사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 교량, 보, 배수시설물 등은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생태계를 보전·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량, 보 배수시설물 등은 최소한의 계획을 수립하여 수생태계를 보전·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공사 및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변 수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 공사 및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검토 의견	◦ 공사시 기계·장비 등에서 발생되는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시 기계·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유로 등의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유출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제시하겠음	
	◦ 공사 시 작업 일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 시 작업 일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처리대책을 수립도록 하겠음	
	◦ 공사 및 운영 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공사 장비의 폐유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공사장비의 폐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음	
	◦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야적 등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 정온시설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세륜·세차시설, 살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 대기질과 소음·진동 영향은 기상여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이행하여야 함.	◦ 대기질과 소음·진동은 본 보고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저감방안 및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토록 하겠음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 계획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산정량 만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탄소중립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 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함.	◦ 본 계획 수립 후 공사시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이행하고 시행토록 하겠음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책 및 민원 해결방안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토록 하겠음 	

나. 영산강유역환경청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계획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7개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천(나주시), 감정천(나주시), 삼천천(담양군), 무동천(구례군), 산정천(해남군), 월평천(강진군·해남군), 신평천(해남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은 상위·관련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분석 시 치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 수립 시 상위·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천의 연속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분석 시 치수안정성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검토·제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안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충실히 반영·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안 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초안 대비 변경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총괄표(시설물계획별 합계를 포함) 작성과 함께 변경 사유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시행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본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충실히 반영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안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초안 대비 변경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총괄표(시설물계획별 합계 포함) 작성과 함께 변경 사유를 제시하겠음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하천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관련 계획과의 부합·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해·재해이력 등을 종합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최근 계획하천에서 수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금회 개수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 - 계획하천이 풍수해 위험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금회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하천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관련 계획과의 부합·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며, 수해·재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겠습니다 - 최근 계획하천에서 수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조사·제시하겠습니다며, 금회 개수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계획하천이 풍수해 위험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며,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금회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제시하겠습니다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률적·획일적 설계기준(홍수량)을 적용하기보다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하천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개수율,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면적 및 시설(가옥, 농경지, 도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이 크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시설계획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제시 ○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횡적구조물(교량, 보·낙차공)은 존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철거하고, 존치 또는 재가설·신설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와 사유, 설치할 시설물의 형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률적·획일적 설계기준(홍수량)을 적용하기보다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천재해위험지구, 상수침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개수율,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면적 및 시설(가옥, 농경지, 도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이 크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시설계획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겠습니다 ○ 하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교량, 보·낙차공 등의 횡적구조물은 존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가설, 존치 또는 신설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와 사유, 시설물의 형식 등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계획 의 적정 성	- 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제시	- 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겠음	
	- 횡적구조물의 철거는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철거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한 후 이를 계획홍수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제시하겠음	- 횡적구조물의 철거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한 후 계획홍수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제시하겠음	
	- 어도 설치 계획을 제시한바, 부득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전면 월류식 자연형 여울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형 어도 설치를 계획	- 부득이하게 어도를 설치할 경우 전면 월류식 자연형 여울 설치를 우선 검토하겠으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형 어도 설치를 계획하겠음	
생물 다양 성 · 서식 지	○ 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할 보전지역* 등을 명기하고 일부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하천 구역은 수변식생 원형보전, 보·낙차공 철거 등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 계획하천 구역 중 자연환경 보전이 고려되어야 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구역을 명기하고, 일부 구간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들 구역은 수변식생 원형보전, 보·낙차공 철거 등 실현 가능한 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겠음	
보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최근에 고시된 생태·자연도를 적용하고 계획하천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의 지정 사유를 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최근에 고시된 생태·자연도를 적용하겠으며, 계획하천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의 지정 사유를 제시하겠음	
	- (장성천, 감정천, 산정천, 월평천) 하천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및 습지 구간은 가급적 보축으로 계획하고 축제가 불가피할 시 축제 및 보축 등 수단·방법 대안에 대한 장·단점(필요성·환경영향)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 후 구체적으로 제시* * 축제계획 수립 시와 보축계획 수립 시를 비교·분석	- 산정천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및 습지 구간은 가급적 보축으로 계획하겠으며, 축제가 불가피할 경우 축제 및 보축 등의 수단·방법 대안에 대한 장·단점(필요성·환경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축제계획 수립 시와 보축계획 수립 시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겠음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생물 다양 성 · 서식 지 보전	○ 문현·현지조사 결과, 사업구역과 주변에 서 법정보호종(삶, 수달, 황조롱이, 꺽저기 등)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 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 수달, 삶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므로,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구간을 300~500m 단위로 구분한 후,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별로 공사하는 계획을 검토	○ 문현 및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법정보호종(삶, 수달, 황조롱이, 꺽저기 등)에 대해 추후 계획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 이동성이 높은 법종보호종인 수달, 삶의 서식이 확인된 바, 서식환경을 보고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후 계획시행 시 공사구간을 300~500m로 구분한 후, 이들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별로 공사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음	
	○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 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 갈수기에 기존 유로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 수립 검토	○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 생태계 서식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은 검토·제시하겠음 - 공사시 공사장비의 하도 내 진입 방지 및 최소화, 갈수기에 기존 유로 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검토하겠음	
	- 교량 공사 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 검토	- 교량 공사시 하상 내 부대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도보다는 가교 설치를 우선 검토도록 하겠음	
	○ 동 계획 하천 중 해양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해양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산정천) 남해로 합류하는 하천이므로 해양 동·식물상 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 수립·제시	○ 본 계획하천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 본 하천은 남해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해양 동·식물상 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 수립·제시하겠음	
	○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자연호안이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하천의 호안을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회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 동 사업은 확폭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바, 확폭 구간을 도면에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 본 계획은 확폭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폭 구간을 도면에 명시하고 확폭에 따른 식생 훼손 면적 산정 및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 하폭 확장에 따른 축제 구간은 최대한 완경사 자연형 호안으로 계획하고, 자연성을 회복한 호안은 최대한 보전하거나 보축하는 등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하폭 확장에 따른 축제 구간은 최대한 완경사 자연형 호안으로 계획하고, 자연성을 회복한 호안은 최대한 보전하거나 보축하는 등 식생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하천 내 여울, 흐름, 폼의 반복적 구배 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 강구	- 하천 내 여울, 흐름, 폼의 반복적 구배 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하천에 적용 예정인 호안 공법들은 구간 별로 형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하천에 적용 예정인 호안 공법들은 구간 별로 형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토록 하겠으며, 그 형식은 하천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제시하겠음	
	- 식생의 도입을 저해(자연석, 석축 쌓기 등)하고,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지양	- 식생의 도입을 저해(자연석, 석축쌓기 등)하고, 홍수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은 지양토록 하겠음	
	○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축제 및 교량 재가설 등 공사 구간 및 내용을 조망점별 사진에 반영·제시	○ 계획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겠음 ※축제 및 교량 재가설 등 공사 구간 및 내용을 조망점별 사진에 반영·제시하겠음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 하천의 특성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 중 수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 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수질측정 결과, 하류수계 영향 여부,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등	○ 계획하천의 수질측정결과, 하류수계 영향여부,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등 하천의 특성 및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 수질목표기준을 설정하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겠음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수환경의 보전	- 계획 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계획하천의 수질 목표기준 설정 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토록 하겠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 예측을 위해 하천별 상류, 중류, 하류 지점에 대하여 1회 이상의 수질조사(하천 저질 포함)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예측을 위해 1회 이상의 수질조사(하천 저질 포함)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토록 하겠음	
	○ 하폭 확장 및 하도 정비로 인한 건천화·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지양하고 기준 하천 횡단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축제 또는 보축하는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하폭 확장 및 하도 정비로 인한 건천화·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지양토록 하겠으며, 기준 하천 횡단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축제 도는 보축하는 대안을 검토·제시하겠음	
	- 축제 및 보축 등 제방계획이 수립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개요, 토지 이용 현황, 특징(현황사진 포함), 평면도 및 횡단면도 제시	- 축제 및 보축 등 제방계획이 수립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개요, 토지이용 현황, 특징(현황사진 포함), 평면도 및 횡단면도를 제시하겠음	
	- (무동천) 상대적으로 하폭이 넓은 구간(No.0+350)이 있으므로 하폭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시	-	
	○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하천의 수질 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 준설토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오염도 평가 결과가 '나쁨' 단계 이하인 경우,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 예규 687호, '15.11.16) 참고	○ 하천저질의 오염현황은 해당하천의 수질 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 준설토 이용방안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오염도 평가 결과가 '나쁨' 단계 이하인 경우,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제시토록 하겠음	
	○ 하천정비 시 대기질, 소음·진동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하천정비 시 대기질, 소음·진동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 대기질 조사 시 조사범위는 계획하천 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조사 시 조사범위는 계획하천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겠음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시,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운반·수집·보관·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추후 계획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시, 발생 폐기물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운반·수집·보관·처리 등 전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제시도록 하겠음	
	○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 4. 13.),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2015. 12. 9.) 등 참조	○ 추후 계획시행시 사업계획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와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정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 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도록 하겠음	
	-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중 N ₂ O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고정배출원 0.6kg/TJ를 적용하였으나, 사업지구 내에서 절성토 및 운반 등을 위해 건설장비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므로, N ₂ O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이동배출원 2kg/TJ 적용하여 재산정·제시	-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N ₂ O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고정배출원 0.6kg/TJ를 적용하였으나, 계획하천 내 절성토 및 운반 등을 위해 건설장비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므로, N ₂ O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이동배출원 2kg/TJ 적용하여 재산정·제시하겠음	
	○ 계획 하천의 현재·장래의 이용·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간관리 계획(보전, 복원, 친수지구)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하천의 현재·장래의 이용·관리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전, 복원, 친수지구 등의 공간관리 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위성사진에 공간관리계획 구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현장 사진·도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현황, 계획 등) 및 장래 관리계획 제시	- 위성사진에 공간관리계획 구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현장 사진·도면 등)을 통한 토지이용 현황, 계획 등) 및 장래 관리계획 제시하겠음	
	-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원형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	-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원형보전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환경 친화 적 토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수지구는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 문현자료(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생태·자연도 등) 및 현황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 -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현지조사표(동물상 포함) 및 측정 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부록에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제시하겠습니다 ◦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며, 최대한 정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현자료(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생태·자연도 등) 및 현황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장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제시하겠습니다 -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현지조사표(동물상 포함) 및 측정 기록지 등을 함께 제시(부록에 첨부)하겠습니다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 예측 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 환경영향 예측 및 예측조건, 예측 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를 제시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 동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겠습니다며,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겠습니다 - 동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직책·성명을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직책·성명을 제시 하겠음 	

다. 해남군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총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 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하천사업추진 및 하천 본래의 형태를 훼손하는 계획은 지양하고, 하천 내 시설물의 철거, 보강, 재가설 등을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 수립 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또한 하천사업추진 및 하천 본래의 형태를 훼손하는 계획은 지양하고, 하천 내 시설물의 철거, 보강, 재가설 등을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가뭄 등에 대한 데이터분석 및 세부 대책을 반영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가뭄 등에 대한 데이터분석 및 세부 대책을 반영토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하부 하천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하부 하천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제시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겠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설정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설정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환경 보전 방안 의 대안	◦ 환경보전방안과 더불어 집중호우등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범람시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환경보전방안과 더불어 집중호우 등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범람시의 대책을 강구하겠음	
	◦ 대기, 소음진동, 수질, 동식물상 조사는 기상 및 계절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설정하고 실시해야 함	◦ 대기, 소음진동, 수질, 동식물상 조사는 기상 및 계절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설정하고 시행토록 하겠음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렴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기타 의견	◦ 하천 상부를 통과하는 도로 하단 부분은 기둥등에 의해 하천 흐름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 하천 상부를 통과하는 도로 하단 부분은 기둥 등에 의해 하천 흐름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강수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겠음	
	◦ 하천재해예방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하천재해예방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